

예산 편성 시 유의 사항

- 본 지원 사업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원금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를 발급」하여 관리·집행하며, 「서울문화예술 관리시스템(SCAS)」에서 집행등록, 정산합니다.
- 인건비, 원천세 외 모든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후 계좌이체 혹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만 가능하며, 현금인출을 통한 집행은 불가합니다.
- 인건비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에 필요시 과업에 근거한 용역계약(근로계약은 불가)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기관 내부 인력의 인건비 및 단순 행정업무를 대신 하는 인력으로 편성 불가합니다. (SCAS 시스템 상>인건비>개인사례비로 편성)
- 지원금 사용에 대한 회계법인의 회계검증 절차는 필수이며, 예산 계획 내 회계검사 수수료를 편성해야 합니다. (SCAS 시스템 상>회계검증수수료로 편성)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고용주체(재단, 구청)에서 별도 고용보험 가입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발생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원금 예산 내에서 편성·집행 가능합니다. (SCAS 시스템 상>일반수용비>기타운영비로 편성)
- 자산취득성 물품(전자기기, 가구, 각종 집기류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운영 경비(기관 수선비, 공과금, 임대료, 사무용품 등), 시혜성 물품(기념품, 기프티콘 등),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각종 부주의로 발생한 가산세 등은 지원금으로 예산 편성 및 사용 불가합니다.
- [양식]지원신청서-사업예산계획은 사업비의 총괄요약이자, 편성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이며, 실제 예산편성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내 <지원금 집행 가능 항목> 및 단가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지원금 집행 가능 항목

목	세목	용도
인건비	개인 사례비 (사업소득)	○ 기획인력 인건비 - 사업 내 총괄기획 프로그램별 기획 등 민간외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 가능하며, 기관 내부 인력의 행정 업무를 대신 하는 인력으로는 편성 불가
	개인 사례비 (기타소득)	○ 전문가 사례비 - (개인)자문회의수당, 연구개발비, 퍼실리테이터 발제비 등 전문가 사례비 - (개인)예술가/예술단체 작품 창작비, 공연료, 원고료, 통역료, 기타 용역비 등
	개인 사례비 (일용근로소득)	○ 강사비 : 주강사비, 보조강사비, 특강강사비 *세부 단가 하단 기준 하단 참조 ○ 단기 인건비 : 프로그램, 축제 등 진행에 필요한 단순 운영인력 * 기획인력 인건비와 전문가 사례비/강사비/단기 인건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사업/기타소득 여부는 신청기관에서 판단 * 사업관련 부여된 역할에 따라 용역 계약으로 추진 가능 * 세부 단가 기준 하단 참조
	원천세 (수동입력X)	○ 개인 사례비에 대한 원천세(수동입력X), * 개인 사례비 항목에 원천세 포함 금액 기재 후, SCAS 시스템 내에서 '원천세계산' 기능 사용하여 자동 적용 * 고용보험비 계산방법 및 대상 여부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관련 게시물 참조
	복리후생비	○ 고용보험 및 예술인고용보험비용 등
	행정인력인건비	○ 본 사업에는 해당 없음
일반수용비	용역비	○ 행사, 연구 용역 등 * 단순 운영대행을 위한 교육단체, 대행사 등으로의 재교부 불가
	홍보비	○ 광고비, 디자인 인쇄물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책자 제작, 광고비, 홍보물 발송/부착, 사진영상 촬영/편집 등
	제작비	○ 무대, 소품, 의상 등 무대 관련 제작비
	재료비	○ 미술재료 등 각종 재료비, 잡화 등 소모품 구입비
	발간비	○ 결과 자료집, 작품집, 도록 등 책자 발행에 필요한 비용
	기타운영비	○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 * 기타 진행비, 예비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 불가 * 기타비용에 관해서는 재단 담당자 사전 확인 필요
임차료	대관료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장소 임차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임차료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물 발송 등 우편료 ○ 계좌이체 수수료
사업추진비	사업 추진비	○ 자문회의 간담회 프로그램 등 회의 및 행사 진행에 필요한 다과/식대
국내외여비	교통 및 체제비	○ 본 사업에는 해당 없음
회계검증수수료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

[참고 1-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지원금 집행 불가능 항목 예시

인정불가 경비	세부내역
일상적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 일반사무실 임대료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산취득비	-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 헤드셋, 의자, 의류, USB 등
행사 답사비 등 비용	- 내부직원의 외부 답사를 위한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 세금 납부 시 책정된 가산세는 지원금으로 사용 불가 -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2023년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교부 관련 지원금 집행요령에서 재안내
부가가치세	-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예술교육 시설 건립·리모델링 비용, 홈페이지 구축·유지보수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설비형 예산집행 불가함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거나 재단이 인정한 대체자료 및 사유서 등으로 재증빙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 작성

[참고 1-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강사비(교육 프로그램) 편성 기준

<p>■ 주강사</p> <p>-교육 회차 당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예술(교육)가</p> <p>-시간당 60,000원 책정 가능</p>	<p>- 교육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p> <p>- 타당한 사유 없이 일괄 최대시간(3시간)책정 지양</p> <p>※ 교육준비활동 비용이 별도 지급되므로 실 교육시간 운영 기준으로 책정</p> <p>※ 특별수업의 경우(결과발표회, 결과발표회 리허설 등) 1일 최대 5시간 책정 가능</p> <p>※ 특강강사 및 행정운영 인건비와 중복지급 불가</p> <p>※ 강사비는 2022 서울문화재단 TA 기준</p>
<p>■ 보조강사</p> <p>- 교육 회차 당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적으로 돕는 예술(교육)가</p> <p>-시간당 40,000원 책정 가능</p>	
<p>■ 교육준비활동</p> <p>- 연구활동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키트 구성 및 배포, 모의수업, 사전 교육회의 등의 활동에 대한 준비활동비(단, 관계자 간 네트워킹 및 상호교류 활동 불가)</p> <p>- 전체 교육 회차의 30%이내에서 책정가능(예시: 총 20회차 수업시, 최대 6회차 편성)</p> <p>- 교육준비활동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p> <p>※ 특강강사 및 행정운영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p> <p>※ 특강강사비 : 프로그램 운영 상 일회성의 특별교육 회차가 필요한 경우 적용가능 (5p '강사료 산정기준' 참조)</p>	

[참고 1-3]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기획 인력(PM) 인건비 편성 기준

※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인력운영 관련 인건비 편성(참고사항)

- PM 인건비의 총액은 지원금의 40% 이하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하되, 경력 및 업무 범위·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

1. 산정 근거 :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민간전문가 보수책정 기준을 차용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2.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1개월 당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시 금액)

- 책임연구원급 : 월 3,496,704원 / 연구원급 : 월 2,681,226원
- / 연구보조원급 : 월 1,792,309원 / 보조원급 : 월 1,344,277원

※ 회계 검증을 위한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참고사항)

- 자부담으로 진행을 권장하나,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집행 가능함
- 회계법인별 세부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업비	수수료(원)	비 고
3천만원미만	302,000	※ 부가가치세 포함액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60,000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90,000	

참고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단가 기준 참고사항

- * 해당 기준을 준용하여 상한선으로 각 사업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하며, 상한액 이상으로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원금 교부신청 시 서울문화재단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진행
- * 지원사업 선정 후 지원금 집행요령 배포 시 일부 항목에 대해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사업 선정 후 교부신청 시 각 기관 별 예산계획 검토 및 조정 예정

1 공통 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 단가 기준표는 지급 가능한 최대 한도액임
- 한도액보다 가한 지급 불가/감한 지급 가능
- ※ 단기근무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감할 수 없음 (서울시 생활임금 준수)

2 강사료 산정 기준

가. 강사료의 산정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나. 강사료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

강사(지급주체)	강의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동일	동일	동일	동일	×
		동일	다름	○
		다름	동일	○
	다름	불문		○
다름	불문			○

3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강의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공공분야 (공직자 등)	민간분야	
특강 및 일반강의	특(1)	기본 1시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초과	20		
	특(2)	기본 1시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초과	15		
	일반 (1)	기본 1시간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초과	12		
	일반 (2)	기본 1시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급 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초과	7.5		
	일반 (3)	기본 1시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공직 유관단체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초과	5		
	일반 (4)	기본 1시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초과	4		
	보조 강사	기본 1시간	4	각종 교육 및 강의 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초과	4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 등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공직자 등'이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3.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4.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5.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6.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7.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8.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9. 저작권자의 강의(녹화, 온라인 송출 등) 동영상을 재이용 하고자 할 때에는 강사료 계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사 미동의 시 해당 강의는 녹화 또는 저장하지 않음, 강의 동영상 활용 시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어 진행 할 수 있음
10.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 강사;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준용 가능
1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
1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초청한 그 사례에만 적용

나. 퍼실리테이터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 대상
퍼 실 리 테 이 터	(1)	최초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2)	최초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3)	최초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대학 교수 이상 ◦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4)	최초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 예술분야 전문가로 역량개발 및 협업 관련 경험을 가진 자
		초과 (매시간)	

-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지급 (하단 별첨 참조)
2. FT 요건: 집단을 관찰 및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촉진자로, 이에 걸맞은 경력 및 역량을 지닌 자
3.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4.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다. 다수인강의(1인 금액이 아닌 총 금액임)

출강 인원 시간	5인 이하	6인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 주) 1.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 사회적 지명도에 따라 별도 시중단가 적용 가능

라. 위원회 참석수당

○ 자문회의 지급기준

구분	단위	수 당 (기준)	지급기준	비 고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150,000원 초과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 ◦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 ◦ 정책 및 사업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기본료: 최초 2시간 기준 최대 1시간까지 초과분 지급 가능 ※ 1일 최대 3시간 ※ 원격 회의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주) 1. 위원회 참석수당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의 “위원회 참석비” 준용
 2. 해당 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무보수 비상근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3. 임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4. 다만 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가능
 5. 자문회의 후 컨설팅 보고서를 재단에 별도 제출하는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 가능
 6. 회의 참석수당 지급은 참석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필수로 함
 7.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회의경비 지급기준

구분	변경 전(2022년)	변경 후(2023년)
식비	2만원, 3만원, 4만원 이하	8천원
다과	6천원	

- 주) 1. 단가 기준은 식대와 다과비를 포함한 금액임.
 ※ 단, 다과비만 사용할 경우 최대 6천원 (심사 참여자를 위한 다과비 지급액 최대 3천원)
 2. 행사홍보비 내 식대 지출 불가(다과비 지출 가능)
 ※ 행사 진행에 참여, 참석하는 민간인 및 무료 자원봉사자의 경우 식비(간식비 포함) 집행 가능 (8,000원)
 3. 심사/평가 수당 지급 시 간담회비 지급 자제.

4 심사 및 평가수당

가. 심사 및 평가 수당

○ 심사수당

구분	수당 (기준)	비고
가택·온라인 심사	시간당 50,000원	◦ 1일 상한액 400,000원
서류 심사	기본료(최초1시간) 100,000원 초과(매시간) 50,000원	
인터뷰, 현장 심사	기본료(최초1시간) 100,000원 초과(매시간) 70,000원	◦ 1일 상한액 500,000원

- 주) 1. 내부 임직원(이사 포함)에게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2. 단, 이사회 서면결의 시 심사수당 기준 적용(가택 심사 2시간 기준)
 3. 심사 수당 지급 시 간담회비 지급 자제, 단, 식사가 불가피할 경우 간담회 지급 기준 일반인사 단가 적용

○ 평가수당

구분	수 당 (기준)	비 고
가택·온라인 평가	시간당 40,000원	◦ 1일 상한액 320,000원
현장 평가	기본료(최초1시간) 100,000원 초과(매시간) 40,000원	◦ 1일 상한액 380,000원

- 주) 1. 가택·온라인·현장평가 수당에는 평가서 작성비가 포함
2. 현장 평가 수당 지급 시 간담회비 지급 자제, 단, 식사가 불가피할 경우 간담회 지급 기준 일반인사 단가 적용

5 인력 용역비 등

가. 무대인건비

○ 일반크루

구분	수 당 (기준)	비 고
무대·조명(음향) 크루	110,000원	◦ 1일 8시간 기준

○ 무대예술전문인

구분	수 당 (기준)	비 고
무대1급(무대, 기계, 음향, 조명 1급)	257,018원	◦ 한국물가정보 '2021년 9월' 기준 ◦ 1일 8시간 기준 ◦ 자격증 사본 등 관련 자료 첨부 필수
무대2급(무대, 기계, 음향, 조명 2급)	203,719원	
무대3급(무대, 기계, 음향, 조명 3급)	147,787원	

나. 단기근무자 인건비

구분	수 당 (기준)	비 고
단기근무자(2023년)	11,157원 (시급)	◦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반영

다. 학술연구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구분	월 임금(23년)	비 고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구원	월 2,681,226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보조원	월 1,344,277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2.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이며, 202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라. 예술단체 공연료 : 별도 시중가 적용

6 원고료

가. 지급대상

기준	세부 요건
지급대상	• 원고 집필자
대상원고	• 강의, 교재 편찬(부교재 포함), 발간물 등 제출 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원고 • 순수 창작물, 연재물, 전문가 지식수록, 전문가 칼럼, 평론, 현장취재 원고 등 • 교양, 에세이, 서간문, 논문 등(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고)

- 주) 1. 재단직원에게 원고료 지급 시 기준액의 50%만 지급 (해당 업무 담당직원은 제외)
 2.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1매당 12,000원
A4 용지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42,000원 (원고지 3.5매 기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42,000원

- 주) 1.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2. 신규 원고 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 원고는 미반영)
 3.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4. 원고 면별 글자 수 및 종류(평론, 현장 취재 등)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감액 또는 증액 가능 (원고지 1매 기준 9,600원~14,400원)
 ※ 위 기준단가로 책정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일 경우, 대표이사 방침 등을 통해 별도 책정 가능 (근거 必)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분	기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 이상~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이하	20줄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라. 홍보간행물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참고

▶ 세부내용 확인: [\[홍보간행물 지급규정\]](#) 클릭 → 첨부되어 있는 한글파일 확인

- 대상항목: 만화료, 일러스트(삽화), 사진료, 편집료 등

7 기타

가. 통역료 / 번역비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최저기준 준용

▶ 세부내용 확인: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링크\]](#) 클릭

나. 수어통역 / 번역비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지급 기준을 준용하되.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음

▶ 세부내용 확인: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클릭

다. 대관료

○ 세미나실, 회의장, 공연장 등 대관의 경우 대관사의 책정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예: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 문화 시설 등)을 우선 활용할 것

[별첨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첨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의 구분)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의 직급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별표의 직급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에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제2조 관련)

분 야	등 급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기관유형					
입 법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사무처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사 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사무처장		사무차장		
	대법원	대법관		14호봉 이상 판사	13호봉 이하 판사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행 정 (국가직)	외교부				6등급 이상	5등급 이하
	감사원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제1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특별감찰관		
	검찰	검찰총장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			경찰청장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하
	소방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정감 이하	소방령 이하
	군인	대장		중장	소장 이하 대령 이상	중령 이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차장, 기획조정실장		
	기타	각 부 장관,		각 부의 차관 및 각 처.청의 장,	고공단 지도직, 고공단 연구직,	지도직, 연구직,

분 야	등 급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기관유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전문경력관 27호봉 이상, 전문임기제(가급)	전문경력관 26호봉 이하 전문임기제(나급) 이하
지방 자치 단체	광역	행정	서울특별시장	기타 시·도지사		
		의회			시·도 의원	
	기초	행정			시·군·자치구 단체장	
		의회			시·군·자치구 의원	
교 육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원,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포(2016. 9. 8.)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직급별로 구분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면서,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다만, 직급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에 한정함

□ 주요내용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급을 정함

<국민권익위원회 제공>